

(붙임 1)

## 「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

### I 개정 필요성

-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」 운용 방식 중 지역본부별로 통일성 있게 운용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하고, 불분명한 자구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도록 정비\*

\* 「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」 세부 운용기준 통보(금융기획팀-765, 2022.11.18.)

### II 주요 개정 내용

- (기준변경) 특별지원부문의 지원대상 예외업종인 전문서비스업\*과 보건업\*\*을 전략부문과 일반부문에 확대 적용

\* 변호사업(71101), 변리사업(71102), 공인회계사업(71201), 세무사업(71202)

\*\* 병원(861), 의원(862)

- (자구수정) ‘제14조(기타 사항)’ 및 ‘변동보고서 양식’에 의미가 불분명한 자구를 정비

- 기타사항(제14조) :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대상 대출 금리에 대해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」에 따른 금리감면폭을 적용하는 내용을 명확히 기술

- 변동보고서(별지 제4호 서식) : 휴업의 경우는 변동보고에서 제외하도록 변경\*

\* <참고>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4조3항」 지원대상 제외 항목 참조

### III 시행일

- 2023.4.1일(금융기관 대출취급일 기준)

<참고>

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 
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

제4조 (지원대상)

- ① 각 지역본부장은 지역경제여건 및 지역특성에 비추어 지원이 필요한 업종이나 부문을 선정하고 해당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다. 다만, 소재·부품생산업체는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.
- ② 각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중 지역경제여건에 비추어 중점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부문을 전략지원부문으로,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문을 특별지원부문으로 각각 선정하고 그 밖의 지원대상은 일반지원부문으로 선정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  1. 「은행업감독규정」 제79조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
  2. 「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라 최종부도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체
  3. 폐업업체